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양 주 시 의 회
전문위원 김형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형열 입니다

-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므로서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예산총액(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4,776억원으로서.
- 실질적 집행에 있어 세입은 4,891억원 징수결정하였으나 4,706억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이에 비하여 세출은 3,606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04억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4억원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 이를 세입과 세출을 대입한 처리상황은 세입액 4,706억에서 3,606억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이 1,100억원 발생하였으므로 명시이월로서 498억원, 사고이월로 207억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중 34억의 사용잔액을 반납조치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7,0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은 별도안건으로 상정하므로 제외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실제수납액과 지출액 결산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에서는 2006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현액 3,202억 6,020천만원을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3,209억 9,270만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2,556억 6,6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잔여액은 2007년으로 498억 3,142만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2,534만원을 반납하고,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등 120억 6,976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 기타 13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비롯한 1,148억 5,001

만원을 계획 예산현액으로 1,150억 9,906만원이 실제 수납되어서, 834억 2,611만원을 지출집행하고, 127억 252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1,032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 세입금과 예산불용액등 189억 6,009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현액)	수납액 (A)	지출액(B)	잔액(잉여금) (C=A-B)			
				계	이월액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35,110	436,091	339,092	96,999	62,535	3,435	31,029
일반회계	320,260	320,992	255,666	65,326	49,832	3,425	12,069
기타 특별회계	114,850	115,099	83,426	31,673	12,703	10	18,960

-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 세입에서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8%이고 2005회계년도 96.4보다는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 미수액은 123억 9,202만원으로서 많은 비중의 분야는 지방세가 63억 6,911만원으로서,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 주민세, 자동차세등에서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0억 2,290만원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사업 5억 하수도사업 16억등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2006년도 세입중 미수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A) (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율 D/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실제 미수납액
계	435,110	452,957	436,092	16,865	3.7%	1,935	14,930
일반회계	320,260	335,217	320,993	14,224	4.2%	1,832	12,392
지방세	51,813	60,455	52,685	7,770	12.8%	1,401	6,369
세외수입	103,172	110,067	103,614	6,453	5.8%	430	6,023
교부세, 보증 금 보조금	165,274	164,695	164,695	0	0	0	0
기타특별회계	114,850	117,740	115,099	2,641	2.2%	103	2,538

-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비율은 4.2%로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 지방세 77억(미수율12.8%)
 - 주민세 11.7 % (14억)
 - 재산세 4.0 %, (6억)
 - 자동차세 15.2 % (12억)
 - 지난 년도 수입 72% (28억)
 - 세외수입 64억(미수율 5.8 %)
 - 부담금 23.9 % (3억)
 - 과태료 및 범칙금 63 % (17억)
 - 지난 년도 수입 65% (37억)

이며 2005년 미수납율 3.7%에 비하면 미수납율이 높아졌습니다

미수납 사유중 지난년도 수입 누적분이 절대적이고, 그 외에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등에서 체납액 비중이 높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부담금과 과태료및과태료등에서 미수납율이 높은것 이 원인입니다,

- 주요세목별 체납원인을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대부분 법인할 주민세로서 사업실패, 법인부도로 인한 물건양도 후 납세능력 상실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 주로 체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령초과에 따른 채권확보 해제와 체납차량 소재 불명, 법인폐업 차량에 대한 과세분이 체납의 원인이 었습니다

또한 고질적 재산세의 경우는 압류물건의 대부분이 후순위 압류물건이어서 공매실익을 상실한 경우에 의한 체납액의 매년 누적등이 체납의 실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소 조회 및 재산 조회 등으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며, 거소불명과 무재산은 징수가 곤란하고, 압류물건중 후순위 채무는 받을 있는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실익이 없는 행정력 낭비가 계속된다고 할때는 냉정하게 결손 처분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일반회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백만원

총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기 타
	주민세	지동지세	기타	과년도 수입	부당금	과태료 범칙금	과년도 수입	
12,392	1,494	1,280	606	2,839	387	1,772	3,793	222
100%	12.1%	10.4%	4.8%	22.9%	3.1%	14.3%	30.6%	1.8%

· 2005년도 미수 총계 11781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5.1% 미수납액 증가 되었음

-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단위:백만원

미수납액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 재 산	고질적 체납	소송및압류	기 타
12.392	-	675	218	5,278	329	5,892
100%	0 %	5.4%	1.8%	42.6%	2.6%	47.6%

※ 거소불명. 무재산은 결손처분 대상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분석

- 분야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백만원

총 계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기반시설	하수도사업	농업발전
2,537	152	537	146	1,662	40

100%	6.0	21.2	5.7	65.6	1.5
------	-----	------	-----	------	-----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단위:백만원

미수납액계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및압류	기 타
2,537	0	1,765	0	772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대하여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차량관련 위반 과태료는 불만성 납부기피 체납액이 만성적으로 누적된 것이며, 통상 당해 차량만을 등록압류하고 있으나, 과다 체납자는 초과 압류금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차량 소유자의 부동산도 연계하여 압류하는 채권확보 방안도 검토할수 있을것이며

또한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부과한 소수 의견에 많은 미수액이 집중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건축과정에 부도등으로 조기납부되지 못하고 미수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납부의무 승계등의 절차에서부터 집중관리하여야 미수액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총지출액은 3,390억원으로 집행율은 77.9%로서 전년도 72.3% 보다 상승하였으나,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집행의 실효성

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 이월액은 625억원으로 전년도 814억원보다 189억원이 줄었으나, 예산 집행잔액은 334억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3억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중에는 사회개발분야에서 82억원으로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187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 시설사업특별회계등에서 많은 비중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의 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등의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 사유가 있을수 있겠으나 불용사유가 발생하면은 당해연도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서 예산의 사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 세출결산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지출액B	집행율 B/A	지출잔액 D=A-B	이월액E	집행잔액 F=D-E
계	435,110	339,092	77.9%	96,018	62,534	33,484
일반회계	320,260	255,666	79.8%	64,594	49,831	14,763
기타특별	114,850	83,426	72.6%	31,424	12,703	18,721

※ 2005년도 집행률 72.3%. 이월액 81,411백만원. 집행잔액 28,133백만원

- 집행잔액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예비비
일반회계	14,762	64	111	624	10,537	3,425	1
기타특별	18,721	132	1,216	7	11,263	19	6,084

□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억 66백만원으로서 예산편성 과목상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예산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사업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목설정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민간자본보조 과목의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단가인상등은 1회 추경등에 반영하여 안정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것입니다.
- 예산이체는 7건에 1억 174만원으로서 조직변경에 따라 예산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해당예산을 이동하여 운영하는것으로서 조직변경에 따른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당초 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것입니다.
-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은 11건에 2억 3,413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예비비 지출사유로는 대부분 천재지변이나 예측할수 없는 사유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수 밖에 없는 사업인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위로금, 수해주택 · 농작물 피해복구에 지출되어서 예비비 본연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할수 있으나, 행정기구 신·증설에 따른 지출은 기구 신증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치될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당초예산등에 반영할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 중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 명시이월사업은 89건에 470억원으로 전년도 729억원보다 35% 가 감소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사업은 23건에 154억원으로 전년도 84억원보다 83% 가 증가되었습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 2006년도 이월액은 2005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중 명시이월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고이월사업비

는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중에 반드시 완료하여 예산이 폐기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사유에는 계약후 사업추진 여건변동등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되는 바, 향후에는 충분한 투자심사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자체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추진 못할것이 예상될 경우, 시급한 다른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등 탄력성있는 예산운영이 요구 됩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72억 6,780만원으로서 전년도 기금 총액인 60억 9,793만원보다, 11억 6,9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17억 1,209만원으로서

이중 향토장학기금등 6개 기금에서 5억 4,2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특히 지방채조기상활운용기금에서 4억,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 기금별 내역

단위:백만원

계	지방채조기 상환기금	체육진흥 기 금	향토장학 기 금	노인복지 기 금	식품진흥 기 금	재난관리 기 금	농기계 임대사업
7,267	912	1,416	1,272	1,150	140	2,246	131

※ 2005년도 6,097백만원(지방채조기상환 912백만원)

- 다음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년도말 34억원으로 전년도 74억원 보다 54% 감소하였습니다
보증채권에서 11억 765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채권은 9,057만원이 축소되었고, 그 외 기타 채권에서 50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325억원으로 전년도 375억원 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 채권·채무 결산분석

단위:백만원

채 권 액		채 무 액		비 고
전년도말	당해년도말	전년도말	당해년도말	
7,404	3,421	37,550	32,576	

전반적으로 채무액이 49억원이 감소한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취득 3,337억원. 처분 486억원으로 년도말 현재액은 5,733억원이며, 전년도말의 2,882억원 보다 2,85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증감액 분석

단위:백만원

전년도말	증	감	당해년도말	비 고
288,274	333,726	48,647	573,353	

- 물품증감액은 행자부 정수 물품목이 220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결산분하고 대비가 될 수 없습니다

○ 33개 정수품목을 기준으로 할때 2005년에는 242점에 42억 6,826만원이었으나, 157점 11억2,548만원을 취득하고 21점 2억 6,692만원을 처분함에 따라 2006년 말현재는 378점에 51억 2,683만원 가치의 물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물품 증감액 분석

단위:백만원

전년도말		취 득		처 분		당해년도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42	4,268	157	1,125	21	266	378	5,126	

- 그밖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재정분석등을 통해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예산우용을 하여야 하며 사업최소 및 미진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것이며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집행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 예산편성시 지
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 부터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
으로 전환함에 따른 연속성 있고 차질없는 회계처리가 정립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번 결산 심의에 특별한 뜻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